

# 한국남부발전(주) 2022년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[신인천본부 취사보조원] 채용공고

□ 한국남부발전(주)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방법과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·신체조건·용모·학력·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.

※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2에 의거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이 제한됩니다.

## I

### 채용 개요

#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근무지	근무시간	모집인원	근무기간	급여수준
취사보조원	인천	8시간/일	1명	약 12개월 (22.11 ~ 23.10)	月 275만원 수준 (세전)

※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근무기간은 회사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연장 및 변경 가능

※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3명 이하 모집으로 취업지원(보훈) 가점 미적용

#### 2. 지원자격

□ 공통사항

구분	주요 내용
학력, 연령, 어학	○ 제한 없음
병역	○ 군필 또는 면제자(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)
기타	○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○ 근무지로 출·퇴근이 가능한 자 (합숙소 및 출근수단 미제공) ○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: 공고마감일(접수 마감일) 기준

□ 직무분야별 자격사항

직무분야	자격사항 및 업무내용	
취사보조원	자격	○ 보건증 소지자
	업무 내용	○ 급식보조 및 전처리 업무 등 ○ 식품검수 지원 및 기타 보조업무
	우대 사항	○ 집단급식소, 식당조리 및 위생관리 실무경력 보유자

※ 경력검증은 해당직무가 표출되어 있는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. 우대사항은 면접 평가 시 일부 반영

3. 전형방법

단 계	내 용	세부기준	비고
1단계	서류전형	○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-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	5배수
2단계	면접전형	○ 면접(100점) - 평가요소 : NCS기반 경험, 직무역량(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), 인성 및 조직적합성	1배수
3단계	신체검사,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	○ 적부판정	최종합격

\* 대면면접으로 시행함 (다만, 인사운영 사정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변경 가능)

※ 최종합격은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※ 동점자 처리 : 1단계(전원합격) / 2단계(보훈 > 장애 > 면접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-문제해결능력-직무역량-조직적합성-인성 고득점 순)

4. 우대사항 적용대상

가산 유형	유형 정의	전형별 가산점	
		서류	면접
등록 장애인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	면제	배점의 10%
저소득층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포함)	배점의 5%	-

## 5. 제출서류

※ 아래의 서류제출은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진행되며, 제출 관련 안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

※ 모든 증빙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

- 기본증명서(상세) 원본 1부
- 신원진술서(작성양식 별도안내) 원본 1부
- 주민등록 초본 (병역사항 기재 필수)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
-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원본 1부
-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, 채용공고일 마감일 이전 자격증 취득분만 인정)
- 보건증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 (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) 원본 1부 (우대사항 해당 등 해당자에 한함)
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 1부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원본 1부
-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
-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  - [“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”만 인정함 ☞ 국가유공자(가족)확인서 인정 불가]
  - \* 해당 채용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없으며, 동점자 처리에만 반영됨
- 저소득층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 증빙서류 원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## II

### 채용전형 일정 및 기타사항

구 분	예 정 일 정	비 고
채용공고	'22. 10. 5(수) ~ 10. 20(목) 11:00	○ 회사 홈페이지 ( <a href="https://www.kospo.co.kr">https://www.kospo.co.kr</a> ) ○ 채용 홈페이지 ( <a href="https://kospo2.saramin.co.kr">https://kospo2.saramin.co.kr</a> )
지원서 접수	'22. 10. 12(수) ~ 10. 20(목) 11:00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10. 25(화) 18:00	○ 채용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
면접전형	11월 중	
최종합격자 발표	11월 중	

※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

### Ⅲ

## 채용관련 유의사항

- 부정합격자(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), 「인사관리규정」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(해임) ①항 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.
-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,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처리되며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면접전형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)을 지참하여야 하며,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불합격 처리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하며,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남부발전 사외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  - 채용서류 반환 요청 방법 : [www.kospo.co.kr](http://www.kospo.co.kr) 접속 → 회사소개 → 채용정보 → 채용문의 → 채용서류 반환신청
  - 지정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
  - 이의신청 절차 : [www.kospo.co.kr](http://www.kospo.co.kr) 접속 → 회사소개 → 채용정보 → 채용문의 → 채용관련 이의신청
  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
    -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   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    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및 「채용업무관리세칙」 등 사내·외 관련 규정 및 법률,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.
-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우리 회사 「인사관리규정」 별표 39(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 라인)에 따라 구제합니다.
- 지원서 작성시 성별, 연령, 출신 학교,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하며,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,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.
  -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최대 6개월로 함
  - 최종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시,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시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

-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: 회사전화를 활용(070-7713-\*\*\*\*)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
-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,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
  - 채용전형관련 문의(평일 14~18시, 금요일 13~16시)
    - 한국남부발전(주) 인재경영실 ☎ 070-7713-8213, 8218, 8219
  -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: 지원시스템 게시판 Q&A
-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 면접이 진행되오니 지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[인사관리규정 제10조 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]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(破産者)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(禁錮)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(懲戒)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(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)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
9.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10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(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)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,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